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정호

문진석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안태준 • 윤후덕 • 임미애

정준호 · 최기상 · 한정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,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,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, 제2조제11호의3·제18조의18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3. "심판"이란 운동경기에서 규칙의 적용 여부나 승부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선수와 체육지도자"를 "선수, 체육지도자 및 심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아마추어 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심판을 고용할수 있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18(심판의 등록의무) ① 심판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 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심판의 자격요건,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1의2. (생 략)	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11</u> 의3. "심판"이란 운동경기에
	서 규칙의 적용 여부나 승부
	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.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선수 등의 육성) ① 국가	제14조(선수 등의 육성) ①
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선수와 체</u>	<u>선수, 체육지</u>
<u>육지도자</u> 에 대하여 필요한 육	도자 및 심판
성을 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
	회 및 경기단체는 아마추어 경
	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
	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심
	판을 고용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제18조의18(심판의 등록의무) ①
	심판은 대한체육회의 회원인
	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
	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.
	② 심판의 자격요건, 범위 및
	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

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